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0-29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0년 12월 10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 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0. 12. 10. ~ 2020. 12. 24.(15일)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이*원	1970. 06. 25.	0178200274100005928	₩22,302,000	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
2	권*현	1972. 04. 30.	0178200274100005918	₩25,596,000	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충 3길
3	최*우	1982. 12. 27.	0178200274100005928	₩18,219,600	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
4	장*욱	1989. 01. 06.	0178200274100005924	₩27,756,000	충청남도 서산시 연당 2길
5	이*희	1988. 02. 29.	0178200274100004086	₩26,028,000	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
6	정*식	1972. 05. 20.	0178200274100004088	₩25,905,600	충청남도 천안 동남구 명동길
7	최*진	1977. 05. 11.	0178200274100004095	₩29,484,000	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
8	강*규	1964. 05. 03.	0178200274100005910	₩31,860,000	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새뜸로 8번길
9	한*남	1968. 05. 24.	0178200274100005912	₩27,324,000	대전광역시 대덕구 흥도로 119번길
10	최*석	1973. 01. 14.	0178200274100005930	₩19,429,200	경기도 여주시 세종로
11	시*천	1965. 07. 27.	0178200274100004094	₩10,931,760	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3길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2	박*상	1967. 02. 20.	0178200274100004081	₩27,702,000	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학담로
13	송*성	1958. 07. 13.	0178200274100004087	₩28,188,000	충청남도 서산시 양대 5 길
14	유*근	1967. 11. 03.	0178200274100005907	₩31,860,000	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94 번길
15	김*수	1970. 03. 10.	0178200274100005921	₩25,812,000	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
16	윤*봉	1969. 03. 01.	0178200274100005917	₩19,126,800	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76 번길
17	서*진	1973. 02. 02.	0178200274100005911	₩31,860,000	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 14 길
18	조*렬	1960. 11. 10.	0178200274100004909	₩25,812,000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
19	도*정	1985. 12. 21.	0178200274100004084	₩28,836,000	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동길

4. 문의처 :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

(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, ☎ 042-347-2106, 2105)

5. 공고내용 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
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